

울산지방법원 2023. 1. 19 선고 2022나1509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3. 1. 19 선고 2022나15090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2. 8. 17 선고 2021가소18019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연합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를 담당변호사 최용석

피고, 피항소인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

변론종결 2022. 12. 22.

판결선고 2023. 1. 19.

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. 8. 17. 선고 2021가소18019 판결

주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38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0. 25.부터 2023. 1. 19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당심에서 소장 기재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하였다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2021. 7. 14. 07:20경 울산 남구 용연동 소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원고 조합원인 (주)C 소속 화물차량((차량번호 1 생략), 이하 ‘원고차량’이라 한다)과 피고가 보험사인 승용차량((차량번호 2 생략), 이하 ‘피고차량’이라 한다)이 충돌하는 교통사고(이하 ‘이 사건 교통사고’라 한다)가 발생하였다.

나. 피고는 2021. 8. 19.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고차량 물적피해(자차) 보험금으로 3,380,000원을 지출한 후 원고의 과실비율을 10%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338,000원의 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고, 원고는 D위원회의 2021. 10. 5.자 결정에 따라 2021. 10. 25. 피고에게 위 338,000원을 지급한 다음,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위 338,000원(이하 ‘이 사건 구상금’이라 한다)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1 내지 7호증,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

가.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차량에게 과실이 있는지 보건대, 갑 8호증, 을 5호증의 각 영상에 나타난 다음 사정, 즉, ① 이 사건 당시 ‘ㅈ’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원고차량은 편도 3차선 중

2차로(직진차선)에서 주행 중이었고,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의 좌측 1차로(직진 또는 유턴차선)에서 선행 중이었는데, 당시 피고차량이 1차로의 우측에 다소 치우쳐 주행하는 점 외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던 점, ② 그런데 피고차량이 교차로 진입 직전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며 실선구간을 가로질러 2차로로 진입함과 동시에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원고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(피고차량의 진입각도나 감속조치 및 1차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했던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, 피고차량이 교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 우회전 또는 3차로로의 진입을 위해 차로를 가로지르려 한 것으로 보인다), ③ 원고차량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직진 또는 유턴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차량이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오른쪽으로 실선구간을 넘어 2차로를 가로지르려 할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, 원고차량의 중량(총중량 약 40톤)과 피고차량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달리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, 원고차량에게 통상적인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또는 방어운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.

나. 그렇다면,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물적피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차량에 관한 공제조합인 원고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구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338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한 날인 2021. 10. 25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. 1. 19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주연, 판사 김용희, 판사 이정목